■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3. 9. 27.>

[ ] 악취배출시설
[ ] 악취방지시설

[ ] 개선명령 이행계획
[ ] 조치명령 이행계획
[ ] 개선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예정)일		
[ ]배출시설, [ ]방지시설 개선 완료(예정)일		
배출시설명 및 방지시설명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개선계획	*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선기간 중 관리계획	예상 악취배출농도(지정악취, 복합악취)	악취저감 및 관리계획
개선완료 후 [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운영·관리계획		

「악취방지법」 제10조제2항·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제출서류 중 세부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공법 등의 개선으로 악취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서류 중 세부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대도시, 시·군·구 (악취배출시설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